#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은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59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7.

발 의 자: 강은미·장혜영·류호정

송영길 • 배진교 • 용혜인

이은주 · 조오섭 · 심상정

박홍근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경우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 그러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인반달가슴곰을 불법 증식하는 등 인공증식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, 불법 인공증식 개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한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음. 이러한 불법 행위로 반달가슴곰이 잇따라 폐사하는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와 관리에 큰 우려를 낳고 있음.

이에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 방지하며,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임(안 제68조제1항제5호의2 및제70조제5호의2).

#### 법률 제 호

#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8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 제70조제5호의2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8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	제68조(벌칙) ①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	
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	
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5의2.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른
	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
	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
6. · 7. (생 략)	6.•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7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70조(벌칙)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	
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	
벌금에 처한다.	<u>.</u>
1. 삭 제	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5의2.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른	<u>&lt;</u> 삭 제>
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	
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	
5의3.·5의4. (생 략)	5의3.·5의4. (현행과 같음)
6. ~ 16. (생 략)	6. ~ 16. (현행과 같음)